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 나.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기능 신설, 강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 1,667명 → 1,697명(+30명)
-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1,629명 → 1,659명(+30명)
- 1) 4급 : 10명 → 11명(+1명)
 - 2) 5급 : 82명 → 90명(+8명)
 - 3) 6급 이하 : 1,527명 → 1,549명(+22명)
 - 4) 전문경력관 : 9명 → 8명(△1명)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67명이며”를 “1,69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669명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97	1,69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659	1,659					
3급	1	1					
4급	11	6	1	1	1	2	
5급	90	39	3	5	4	12	27
6급이하 소계	1,549	1,549					
전문경력관 소계	8	8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총 계	3			
전국체전추진단	3	일반직 : 5급 1명, 6급 이하 2명	2020. 5.31	전국체전 준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667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97명</u> 이며-- -----.
1. 집행기관의 정원 : 1,63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66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 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③ ~ ⑤ (생략)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18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및 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 30명을 증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원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18년도 기준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단가 77,986천원과 '18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나. 비용추계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30명을 증원할 경우 '19년 2,339,580천원을 포함하여 '23년까지 12,322,21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천 원)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비 용	2,339,580	2,400,409	2,462,819	2,526,852	2,592,550	12,322,210

※ 2019년 내역 : '18년도 기준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단가 77,986천원 × 정원증원 30명 = 2,339,580 천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국비	84,000	84,000	84,000	-	-	252,000
시비	2,255,580	2,316,409	2,378,819	2,526,852	2,592,550	12,070,210
합계	2,339,580	2,400,409	2,462,819	2,526,852	2,592,550	12,322,210

※ 순증하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에 대해 기준인건비 30,000천원의 70%를 채용시기부터 3년간 국고로 보조함.

5. 작성자

안전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균(054-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공무원 정원 증원 30명

2. 비용추계 방법

본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 증원 30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직급별 1인당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19년부터 '23년까지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문 창 균
	담 당	박 노 돈
	담 당 자	김 동 균 (480-6773)